

「군포도시공사 부패영향평가」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원 명 희

2020년 12월 1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40호

군포도시공사 부패영향평가 운영내규

제정 2020.12. 1.

제1조(부패영향평가 목적) ① 이 내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부터 점검·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패영향평가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패영향평가」는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규정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는 직제규정에 따라 반부패, 청렴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청렴감사팀」을 말한다.
3. 「관리부서」는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규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부」를 말한다.
4. 「사업부서」는 직제규정에 따라 군포시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공사 정관·규정·내규 및 지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1. 법령 또는 정관, 정부방침, 다른 규정의 변경으로 규정·내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감독기관)의 지침·권고 등에 따라 규정·내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3. 간단한 자구의 수정·삭제 또는 용어의 변경 등 개정 내용이 경미한 규정·내규의 제·개정
4. 조직설치, 업무분장, 문서규정, 차량관리 등 내용에 있어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내규의 제·개정

제4조(부패영향평가 의뢰) 규정·내규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와 사업부서는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부패영향평가 실시) ① 제4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받은 감사부서는 의뢰받은 규정·내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② 감사부서는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에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업무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및 명예감사관, 부패영향평가TF와 협의·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에도 협의·요청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는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의뢰없이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부패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는 별지로 관리한다.

제6조(부패영향평가 재심청구)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패영향평가 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관련 법률과 국민권의 위원회 매뉴얼 및 지침을 준용하며 감사부서에서 따로 정한 것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황 기 성 (390-7606)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의뢰 요청서

□ 의뢰 규정명 : (규정·내규·지침 등)

현 행	제·개정안	제·개정 사유

○ 부패영향평가 의뢰 사유 :

20 년 월 일

요청부서명(팀명) : 담당자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규정명 (규정·내규·지침 등)				
평가담당	소속		성명	
의뢰부서			의뢰담당자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의뢰 조문 및 관련 법령·조례·규정 등을 기재		• 검토내용 기재		• 개선요구 등 결과 후속조치 기재
○ 부패영향평가 결과 :				
20 년 월 일				
확인부서명(팀명) :			확인자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유형별 체크

구분	평가 기준	검토항목	확인여부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제재규정의 적정성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의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특혜발생 가능성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 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재정누수 가능성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예 ☐ 아니오 ☐
	공개성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예측 가능성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